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계획

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특별위원회

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계획

1. 목 적

ㅇ.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의 실태를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

ㅇ. 조사한 결과를 엄밀하게 분석 잘못된 사례를 지적 시정토록 하고 향후 건실한 공사 시공으로 각종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.

2. 조사근거

ㅇ.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

ㅇ.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3. 조사기간 및 장소

ㅇ. '97. 10. 25 ~ 11. 21 (28일간)

ㅇ. 장 소 : 조사 특위에서 정하는 장소 (사무실 및 현장)

4. 조사대상

ㅇ. 조사대상공사

- 건설 : '96. 5. 1 ~ '97. 9. 30일까지 준공 및 추진중인 사업비 1,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
- 산림 : '96. 1. 1 ~ '97. 9. 30일가지 발주하여 준공 및 추진중인 사업

ㅇ. 대상기관

군본청 및 사업소·읍면,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단체 또는 개인

(구체적인 대상 공사 및 사업은 추후 특별위원회에서 정함)

5.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: 13명

위원장 : 1명

간 사 : 1명

위 원 : 11명

6. 조사요령

ㅇ. 조사대상 사업조서 징구

ㅇ. 시공현장 확인위주로 하되 서류조사와 병행

ㅇ.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

ㅇ. 위법 부당사례 확인서 징구 (사진 및 증빙서 포함)

ㅇ. 기타 필요한 방법 병행 및 조사진행은 공개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

7. 조사결과 처리

ㅇ.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는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처리토록 이송

8. 소요경비 집행

ㅇ.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및 필수 소요경비 지급

- 임대료 및 검사료 포함